



# 2021년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제 16 차 정기총회

일 정 : 2021년 2월 23일(화)  
주 관 :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

# 목 차

---

I . 전차회의록 -----	3
II . 보고사항	
- 감사보고 -----	11
III . 부의안심의	
1. 2020년도 사업결과 및 세입·세출 결산서 -----	15
2.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	24
3. 임원선출 -----	33
IV . 부 록	
■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정관 -----	37
■ 회원 명부 -----	49



# I. 전차회의록



## 제 15 차 정기총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20. 02. 19.(수) 10:30 - 12:00
2. 회의장소 : 고강종합사회복지관 4층 향나무
3. 재적회원 : 총 363명
4. 참석자 : 협의회 이사 및 회원 321참석(28명/위임293명)
5. 의안
  - 제1호 의안 : 2019년도 사업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서
  - 제2호 의안 :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6. 회의내용
  - 성원보고  
박혜준 사무처장이 재적 인원수 363명 중 참석28명 위임293명으로 321명이 출석하여 재적회원 과반수를 넘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10:30)
  - 개회선언  
최종복 회장이 사회복지법인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2020년 제15차 정기총회 개회를 선언하다.(10:31)
  - 국민의례  
회원 전원 국민의례하다.(10:32)
  - 회순채택  
최종복 회장이 상기와 같은 안건의 순으로 본 회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의견이 있는지 묻자 회순채택에 대해 원안대로 받기를 회원 전원 동의하고 재청하여 상정안대로 처리되다.(10:33)
  - 전차회의록 승인
    - 전차 회의록을 박혜준 사무처장이 보고하는 과정에 정성기 회원이 유인물로 받기를 제안하고, 회원 전원이 재청하다.
    - 이에 최종복 회장이 회원 전원이 재청하였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하다.(10:37)

○ 감사보고

- 고흥석 감사가 자료집 7p를 낭독하면서 감사보고를 하다.(10:38)

○ 부의안건 심의

**<제1호 의안 : 2019년도 사업결과 및 세입·세출 결산서>**

- 최종복 회장이 제1호 의안을 상정하다.(10:40)
- 박혜준 사무처장이 9-17p의 2019년도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사업 결과보고 및 2019년 세입·세출 결산서와 19-20p의 후원금품 사용 결과를 보고하다.(10:45)
- 정성기 회원이 이월금을 계속 적립하지 않고 사업에 모두 사용해야 되지 않는지 의견을 묻자, 최종복 회장이 정보센터 보조금 외 별도 지원금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비 부족으로 차질이 생길 시 부족한 사업비는 이월금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프로포절이라던가 외부 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하다.
- 박혜준 사무처장이 최소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건비로 사용되는 사회복지정보센터의 보조금이 중단된다는 말이 자주 언급되는 상황이므로, 보조금이 중단되거나 이월금을 다 소진했을 경우에 사무국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없어 고민해 봐야할 내용이라고 설명하다. 이어서 2017년도부터 이월금이 줄어드는 추세이며, 100만원 자체 예산 지출분으로 신설한 동아리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과 교육 네트워크 활성화사업 예산의 경우 과거엔 사회복지정보센터의 보조금 예산으로 집행되었지만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아닌 부천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한다는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의 전달사항으로 인해 자체 예산으로 변경하여 사무국에선 300만원이라는 예산에 대한 부담과 이월금이 감소되는 실정이라고 설명하다.
- 이명위 회원이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 말고도 부족한 점이나 개선된 점에 대한 평가자료가 있는지 묻고, 회원들 전체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제안하자 최종복 회장이 명시된 평가서와 전체회원들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는 없고 사무국 상·하반기 평가와 진행 중간 마다 사무국 점검회의를 하고 있으며, 사업을 마칠 때마다 평가를 반영해서 차기년도의 계획들을 수립한다고 설명하다. 이어서 최종복 회장은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 대한 회원들의 여러 의견 중 진행기간에 대한 의견과, 민·관 합동 문화나눔행사에서는 공공기관과의 더 나은 협력적인 관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또한 많은 회원들이 사례관리와 상담에 대한 교육의 요구들이 많아 사무국에서 회원들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다.
- 이에 최종복 회장이 다른 질문이 있는지 묻고, 1호 의안에 통과여부를 묻자 이덕수 회원이 원안대로 받기를 제안하고 왕정찬 회원이 동의하여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회원 전원 재청하여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하다.(11:00)

**<제2호 의안 :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 최종복 회장이 제2호 의안을 상정하다.(11:01)

- 박혜준 사무처장이 21-22p를 보면서 2019년에 진행되었던 사업과 큰 틀의 변화 및 신규 사업이 없기에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해도 될 것 같다고 설명하며 2020년도 예산(안)은 23p-26p를 참고하여 설명하다.
- 최종복 회장이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회원들에게 의견을 묻다.
- 왕정찬 회원이 2019년도 결산서를 보면 직책보조비 중 활동비로 12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올해는 삭제된 이유를 묻자, 박혜준 사무처장이 오랫동안 근속하고 있던 반지예 간사에게 보상의 개념으로 활동지원비 월 10만원씩 지급하였으나, 올해 해당간사가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어 삭제되었다고 말하다.
- 권치영 회원이 2019년 사회복지정책 연구사업의 책자 발간은 어떤 예산에서 집행되는지 묻자, 박혜준 사무처장이 사무국에서 사회복지정책 연구사업과 관련해서 부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사업신청 승인을 받고 배정된 예산으로 연구사업이 진행되었음을 설명하다.
- 이명위 회원이 동아리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이 회원들에게 많은 관심이 있는지 묻자, 박혜준 사무처장이 작년의 경우에는 4개 단체 지원규모였으며, 마감기간까지 5개 단체가 지원하여 1개 단체가 미선정되었음을 설명하다.
- 이명위 회원이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려다보니 무리가 있을 것 같으므로, 최근 사회복지의 변화된 전달체계 및 정책에 대한 교육사업에 포커스를 맞추는게 어떤지 제안하자, 이에 최종복 회장이 회원들의 많은 의견 중엔 종사자 교육이나 기관 역량 강화에 대한 언급이 많아 현재 사회복지 흐름과 개편되는 전달체계에 대한 부분의 학습은 중요한 것 같다고 말하고, 제안 주신 내용을 감안해서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다.
- 최종복 회장이 다른 질문이 있는지 묻고 제2호 의안 통과 여부를 묻자 권치영 회원이 원안대로 받기를 제안하고 정성기 회원이 동의하여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회원 전원에게 재청하여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하다.(11:30)

## ○ 기타안건 논의

### <기타안건 : 정책연구사업 결과 보고회 진행 논의>

- 최종복 회장이 기타안건을 상정하다.(11:31)
- 최종복 회장이 코로나19로 인해 연기가 된 사회복지정책 연구 사업 보고회의 일정과 진행방식에 대해 회원들에게 의견을 묻자, 이명위 회원이 사회복지사의 날이나 민·관 합동 문화나눔행사 사업처럼 많은 인원이 참여할 때가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하고, 이덕수 회원이 보고집만 배포하는 것 보다는 사무국에서 전체적으로 공지를 하여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보고회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하다.
- 차진수 회원이 코로나19로 인해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동영상 제작이 가능하다면 기관당 배포하고 연구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메일이나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을 제안하자, 최종복 회장은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는 부분을 요약하여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에게 제공하면 효과적일 것 같아 협의해보겠다고 받은 의견들을 감안해서 날짜는

3월 중으로 모임을 갖고 발표하는 것으로 사무국에서 진행하겠다고 말하다.

- 최종복 회장이 추가할 기타안건이나 질문이 있는지 묻고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다.(11:40)

○ 보고사항

<보고사항 : 부천 스타필드 후원사업>

- 박혜준 사무처장은 2월 17일에 사무국에서 최종복 회장, 박혜준 사무처장 그리고 대외협력위원회 조재일 위원장이 스타필드 담당자와 후원금 관련하여 최종 회의를 진행하였고, 작년 회의에선 스타필드의 후원금이 9000만원에서 1억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었지만, 최종 회의의 결과로 사무국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4000만원으로 책정되었다고 설명하다. 이어서 감소된 5000만원의 후원내역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지원으로 3000만원, 범안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1000만원, 마지막으로 김승희 국회의원이 스킨존과 관련하여 안전한 거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집행 예산 1000만원을 스타필드에서 지원하게 되어 9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아 확대편성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다고 전하다. 이어서 박혜준 사무처장이 사무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4000만원 중에서 2500만원은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하는 걸로 확정 되어 추석 이전에 회원기관들에게 온누리 상품권과 관련해서 안내해드릴 예정이며, 남은 후원금인 사업비 1500만원에 대해선 차기 이사회를 통해 주제와 진행방식을 계획하고, 확정이 나면 회원기관들에게 3월 중으로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하다.
- 박혜준 사무처장이 예산으로 7000만원 정도가 사무국 예산으로 편성되지만 사무국이 사용할 수 있는 4000만원과 사무국을 통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지원하는 금액이 3000만원이므로, 사무국 소속 기관들과 관련된 예산은 4000만원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추가 설명하다.
- 최종복 회장이 후원금 예산 7000만원 중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3000만원을 사무국을 통해서 기부금 처리하는 진행 방식을 부천시와 계획이 되었고, 나머지 4000만원은 온누리상품권에 지출되는 2500만원, 그리고 1500만원은 자율적으로 계획한대로 진행되어진다고 설명하며, 1500만으로 사회복지 종자사들에게 사용되는 것 보다는 주민들에게 사용하는 의견이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스타필드와 사무국이 함께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논의, 그리고 후원금 외적으로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에 있다고 설명하다.
- 최종복 회장이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질문이나 의견이 있는지 묻고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다.(11:55)

○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

- 최종복 회장이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으며, 원활한 진행을 도와준 회원들에게 감사를 표

하다.

- 최종복 회장이 정관에 의거, 회의록을 점검하고 서명할 서명위원 5인의 선출 방식에 대해 묻고 사무국 이사진으로 회장을 비롯하여 이덕수, 조재일, 이지완, 박혜준 이사로 구성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묻자 전원 회원이 동의하다.
- 최종복 회장이 5명을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위촉한다고 선포하다.(1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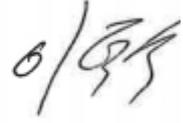
○ 폐회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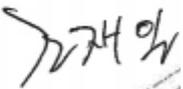
- 최종복 회장이 총회의 모든 순서가 끝났음을 확인하고 폐회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냐고 묻자 회원 전원이 동의·재청하여 폐회를 선언하다.(12:00)

이상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전 이사장과 총회에서 위임받은 서명위원 5인이 다음에 서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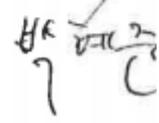
2020년 02월 19일

이 사 장 최 종 

서명인 이 사 이 덕 수 

조 제 일 

이 지 완 

박 혜 준 



기 록 위 영 진 위 영진

# Ⅱ. 보고사항

## - 감사보고



## 감 사 보 고 서

본 감사인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부천시사회복지협회의 2020. 01. 01.부터 2020. 12. 31.로 종결되는 회계연도의 업무집행 내용과 일반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제반 증빙서류와 장부를 일반적인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업무집행내용과 결산서의 각항은 정확하였으며, 그 회계처리는 적정하였습니다.

2021년 2월 9일

사회복지법인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감 사 김 학 무 (인)

감 사 고 흥 석

사회복지법인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장 최종복 귀하



## Ⅲ. 부의안심의

1. 2020년도 사업결과 및 세입·세출 결산보고
2.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3. 임원선출



# 1. 제1호 의안

## 2020년도 사업결과 및 세입·세출 결산보고

### 1) 2020년 사업결과보고

#### ● 사회복지향상 환경개선과 개발

사업분류	목표	실적 (명, 건수)	사업결과
조사 연구사업	연1회 사회복지관련 이슈 및 정책관련 조사연구사업 진행	연중	사회복지 정책연구사업 진행 - 연구주제 1. 지역사회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대상자 사례관리 실천방안 : 화상 인터뷰 사례관리담당자 민간영역 13명, 공공영역 3명 참여 - 연구주제 2.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운영실태 비교분석을 통한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발전방안 모색

#### ● 회원 기관 유대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사업분류	목표	실적 (명, 건수)	사업결과
총회개최	연1회 협의회 운영 사항 심의·의결	연1회 /28명	제15차 총회 개최(02.19) *코로나19로 최소인원 참석하여 진행 -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회원 28명 참석(재직 363명/ 위임 293명, 참석 28명) - 고강종합사회복지관 강당 - 부의안심의: 2019년 사업결과 및 결산,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의결
이사회 개최	연6회(격월진행) 주요사업집행 논의 심의·의결	연4회 /34명	- 제46차(01.14):정기총회 및 정책보고회, 부천시재가복지연합회 등기이사 변경, 2019년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결산(안) 심의·의결, 2020년 부천시 사회복지협의회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회원 현황보고 - 제47차(05.22):2020년 부천시사회복지정보센터 수정사업계획(안) 심의·의결, 2020년 민·관 합동 체육문화나눔행사 관련 논의, 제21회 사회복지의 날 행사, 사회복지정책 연구 사업결과 보고회 개최 논의, 코로나19 후원금 모금사업, 후원관련 논의, 제15차 정기총회 결과보고, 회원 현황 보고 - 제48차(08.13):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지도점검 지적사항 논의, 2020년 제 21회 사회복지의 날 행사 논의, 2020년 민·관 합동 문화활동지원사업 논의, 정책위원회 정책 및 조사연구사업 논의, 회원 현황보고 - 제49차(12.30): 2020년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2차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2차 추경예산(안) 심의·의결, 하반기 주요 사업 보고, 회원 현황보고
민·관 합동 문화나눔 행사	연1회 민과 관이 함께 하는 문화나눔행사 진행	연0회 /0명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대면 행사 미진행
사회복지의 날 기념 행사	연1회 1박2일 워크숍 진행	연1회	-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대면 행사 미진행 - '이웃나눔지원사업'으로 대체 진행 : 부천 지역 시설 및 기관 이용 주민에게 기념품 배분
부천시 재가복지 연합회	부천시 재가복지연합회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사회복지사의 역량 강화 도모	연5회 /51명	20년 워크숍 및 홍보 행사 진행방식 논의, 기관 일정공유 및 이사회 공시사항 안내, 실무자 역량강화교육 진행 여부 및 부재연 방향성 논의, 부재연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점과 회의 참석의 이유 논의, 김장김치 정보공유 그룹화, 20년 사업 및 회계보고, 임원선출, 회칙변경

부천시 지역사회 조직연합회	지역사회조직사업 공유 및 공동사업 진행을 통해 실무자 역량 강화, 지역사회조직 논문 스터디	연7회 /85명	기관별 조직사업 공유, 공동사업 진행 논의, 포스트 코로나-19 아이디어 관련 논의, 4권역 지역조직화기능 담당자 교육 진행 논의, 4권역 지역조직화기능 담당자 교육 진행, 정기총회
기관장 협의회	부천시 사회복지 관련논의,정보공유 역량강화 연수 진행	연0회 /0명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미진행
실무책임자 연합회	기관운영에 대한 전반적 정보공유 및 문화나눔행사진행	연0회 /0명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미진행
정책위원회	부천시사회복지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연1회	'지역사회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대상자 사례관리 실천방안' 연구 방법 논의 및 진행
교육학술 위원회	다양한 사회복지 종사자 교육 / 교육네트워크 단체 활성화사업	연0회 /0단체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미진행
대외협력 위원회	부천 지역기관 및 단체 네트워크 강화 및 지원,사회복지의 날 행사 준비 및 진행 / 동아리 및 문화활동지원사업	연1회 /7명	1차 회의(9.1) 사회복지의 날 행사 대체 '이웃나눔지원사업' 준비 모임 진행
동아리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	협의회 회원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연0회 /0단체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미진행

●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분류	목표	실적 (명,건,회)	사업평가
교육 사업	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진행	연0회 /0명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미진행
교육 네트워크 단체활성화 사업	사회복지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사업 공모방식의 사업비 지원	연중 /0단체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미진행
종사자 해외연수	사회복지종사자 해외연수지원	연0회 /0명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미진행

● 부천시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사업분류	목표	실적 (명,건,회)	사업평가
사회복지 종합정보망 사업	다양한 사회복지 관련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연중	- 부천시사회복지정보센터(welinfo) 홈페이지 운영, 관리 -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시설 프로그램 등록 - 인포레이터를 활용한 복지정보입력
홍보사업	홍보 물품 제작 및 welinfo 활용도 증가	연1회 /3,030개	- 사회복지정보센터 KF94 마스크 홍보물품 제작 - KF94 마스크 지역주민 배포하여 홍보
사회복지 서비스정책 안내 교육	정책안내 및 교육	연0회 /0명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미진행

● 기타사업

사업분류	목표	실적 (명,건,회)	사업평가
VMS사업	연1회 봉사활동인증관리사업 VMS교육	연0회/0명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미진행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홈페이지 운영	연중	-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및 사회복지정보센터 홈페이지 운영 - 각 행사 소식 및 결산 예산보고, 채용공고, 복지정보 등 공지 -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시설 프로그램 등록

## 2020년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결산서

(사회복지법인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1) 총괄표

세 입							세 출									
관	항	목	2020년 예산	2020년 결산	증감(B)-(A)		사유	관	항	목	2020년 예산	2020년 결산	증감(B)-(A)		사유	
			(A)	(B)	액수	비율(%)					(A)	(B)	액수	비율(%)		
<b>총 계</b>			<b>130,209,880</b>	<b>130,215,382</b>	<b>5,502</b>	<b>0.00</b>		<b>총 계</b>			<b>130,209,880</b>	<b>130,215,382</b>	<b>5,502</b>	<b>0.00</b>		
사업수입	수익사업	소 계	21,950,000	21,950,000	-	-		사무비	업무추진비	소 계	8,767,640	8,767,640	-	-		
		회비수입	21,950,000	21,950,000	-	-				기관운영비	403,500	403,500	-	-		
										직책보조비	7,200,000	7,200,000	-	-		
										회의비	1,164,140	1,164,140	-	-		
	일반사업수입	-	-	-	-		운영비	소 계	738,510	738,510	-	-				
						제세공과금		240,000	240,000	-	-					
						수용비 및 수수료		498,510	498,510	-	-					
보조금수입	경상보조금수입	소 계	35,000,000	35,005,502	5,502	0.02		재산조정비	시설비	소 계	-	-	-	-		
										자산취득비	-	-	-	-		
		경상보조금수입	35,000,000	35,005,502	5,502	0.02		사업비	일반사업비	소 계	81,454,428	81,459,919	5,491	0.01		
						사회복지의날행사	358,100			358,100	-	-				
						민관합동 체육문화나눔행사	-			-	-	-				
						해외연수	-			-	-	-				
						조사연구사업	-			-	-	-				
						부재연사업	-			-	-	-				
						실무책임자연합회사업	-			-	-	-				
						기관장협의회사업	-			-	-	-				
						정책위원회사업	-			-	-	-				
						교육학술위원회사업	-			-	-	-				
						대외협력위원회사업	-			-	-	-				
						부지연사업	-			-	-	-				
						동아리지원및 문화활동지원사업	-			-	-	-				
						기타지정 후원사업	46,096,328			46,096,328	-	-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사업	-			-	-	-				
						교육네트워크단체 활성화사업	-	-	-	-						
						실무지역량강화사업	-	-	-	-						
						사회복지정보센터 사업	35,000,000	35,005,491	5,491	0.02						
잡수입	잡수입	소 계	43,642	43,642	-	-		예비비	예비비	소 계	39,249,302	-	-	39,249,302	-	100.00
										예비비	39,249,302	-	-	39,249,302	-	100.00
		기타예금이자수입	43,642	43,642	-	-		차기이월금	차기이월금	소 계	-	39,249,313	39,249,313	-		
						차기이월금	-			39,249,313	39,249,313	-				

(2) 세입내역

[단위 : 원]

관	목	2020년 예산	2020년 결산	증감(B)-(A)		2020년 결산 산출내역
		(A)	(B)	액수	비율(%)	
총 합 계		130,209,880	130,215,382	5,502	0.00	
회비수입	소 계	21,950,000	21,950,000	-	-	
	회비수입	21,950,000	21,950,000	-	-	개인회비 11,270,000 원 단체회비 10,230,000 원 이사회비 450,000 원 계 21,950,000 원
	일반사업수입	-	-	-	-	사회복지의날행사참가비 - 원 기관장협의회워크숍 참가비 - 원 실무자연합회워크숍참가비 - 원 교육학술위원회워크숍참가비 - 원 대외협력위원회워크숍참가비 - 원 정책위원회워크숍참가비 - 원 부재연워크숍참가비 - 원 부지연워크숍참가비 - 원 해외연수참가비 - 원 인증요원양성교육 참가비 - 원 실무지역량강화교육참가비 - 원 계 - 원
보조금수입	소 계	35,000,000	35,005,502	5,502	0.02	
	경상보조금수입	35,000,000	35,005,502	5,502	0.02	사회복지정보센터사업 보조금 35,000,000 원 보조금 이자 5,502 원 계 35,005,502 원
후원금수입	소 계	54,680,000	54,680,000	-	-	
	지정후원금	54,680,000	54,680,000	-	-	지정후원금 계 54,680,000 원
이월금	소 계	18,536,238	18,536,238	-	-	
	전년도이월금	18,536,238	18,536,238	-	-	전년도이월금 -사업수입이월금 18,300,013 원 -후원금이월금 236,225 원 계 18,536,238 원
잡수입	소 계	43,642	43,642	-	-	
	기타예금이자수입	43,642	43,642	-	-	예금이자 43,642 원 계 43,642 원

(3) 세출내역

[단위 : 원]

관	항	목	2020년 예산	2020년 결산	증감(B)-(A)		2020년 결산 산출내역		
			(A)	(B)	액수	비율(%)			
총 합 계			130,209,880	130,215,382	5,502	0.00			
사무비	업무추진비	소 계	8,767,640	8,767,640	-	-			
		기관운영비	403,500	403,500	-	-	기관운영비	계 403,500 원	
		직책보조비	7,200,000	7,200,000	-	-	회장활동비 사무처장활동비 활동비	3,600,000 원 3,600,000 원 - 원 계 7,200,000 원	
		회의비	1,164,140	1,164,140	-	-	이사회 및 회장단회의비 정기총회	= 738,650 원 425,490 원 계 1,164,140 원	
	운영비	소 계	738,510	738,510	-	-			
		제세공과금	240,000	240,000	-	-	협의회비(연회비)	계 240,000 원	
		수용비및수수료	498,510	498,510	-	-	수용비 및 수수료	계 498,510 원	
	재산조정비	시설비	소 계	-	-	-	-		
			자산취득비	-	-	-	-	사무용 비품구입	계 - 원
	사업비	일반사업비	소 계	81,454,428	81,459,919	5,491	0.01		
사회복지의날행사			358,100	358,100	-	-	사회복지의날행사 참가비 사회복지의날 행사 지원금	- 원 358,100 원 계 358,100 원	
민관합동 체육문화나눔행사			-	-	-	-	체육문화나눔행사	계 - 원	
해외연수			-	-	-	-	해외연수비용 해외연수지원금	- 원 - 원 계 - 원	
조사연구사업			-	-	-	-	조사연구사업	계 - 원	
부재련사업			-	-	-	-	부재련사업	계 - 원	
실무책임자연협회			-	-	-	-	실무책임자연협회	계 - 원	
기관장협의회 사업			-	-	-	-	기관장협의회 사업	계 - 원	
사업비			일반사업비	정책위원회사업	-	-	-	-	정책위원회사업
	교육학술위원회사업	-		-	-	-	교육학술위원회사업	계 - 원	
	대외협력위원회사업	-		-	-	-	대외협력위원회사업	계 - 원	
	부지연사업	-		-	-	-	부지연사업	계 - 원	

(3) 세출내역

[단위 : 원]

관	항	목	2020년 예산	2020년 결산	증감(B)-(A)		2020년 결산 산출내역				
			(A)	(B)	액수	비율(%)					
사업비	일반사업비	동아리지원및문화활동지원사업	-	-	-	-	동아리지원및 문화활동지원사업	계	- 원		
		기타지정후원사업	46,096,328	46,096,328	-	-	기타지정후원사업	계	46,096,328 원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사업		-	-	-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사업	계	- 원		
		교육네트워킹단체 활성화사업	-	-			교육네트워킹단체 활성화사업	계	- 원		
		실무자 역량강화교육	-	-	-	-	실무자역량강화교육	계	- 원		
		사회복지정보센터사업	35,000,000	35,005,491	-	5,491	-	0.02	인건비	급여	24,000,000 원
										퇴직적립금	1,889,649 원
										사회보험료	2,371,280 원
									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료	1,059,355 원
										여비	- 원
	제세공과금								- 원		
	사회복지종합정보망관리								550,000 원		
정보센터운영사업	-	35,005,491	-	5,491	-	0.02	사회복지종합정보구축망사업	- 원			
							홍보사업	2,700,000 원			
							사회복지정보안내 및 교육	- 원			
반환금 (인건비 및 예금이자)							반환금	2,095,650 원			
							계	35,005,491 원			
예비비	예비비	소 계	39,249,302	-	-	39,249,302	-	100.00			
		예비비	39,249,302	-	-	39,249,302	-	100.00	예비비	계	- 원
차기이월금	차기이월금	소 계	-	39,249,313	39,249,313	-					
		차기이월금	-	39,249,313	39,249,313	-			회비수입 이월금	30,410,856 원	
								후원금 이월금	8,838,446 원		
								보조금 이월금	11 원		
								계	39,249,313 원		

## 2020년 후원금품 사용 결과보고

◎ 기 간 : 2020년 1월 1일부터 ~ 2020년 12월 31일까지

### 1. 후원금(금전) 수입명세서

(단위 : 원)

연 월 일	후원금의 종류	후 원 자	내 역	금 액	비 고
계				54,934,774	
2020.01.01	2019년 이월금	-	-	236,225	
2020.03.25 ~ 04.29	지정후원금	코로나19 모금	후원자 58명	2,180,000	
2020.03.31	지정후원금	신세계프라퍼티(부천점)		15,000,000	
2020.04.20	지정후원금	신세계프라퍼티(부천점)		37,500,000	
2020.06.28	예금이자	-	-	9,460	
2020.12.27	예금이자	-	-	9,089	

### 2. 후원금품 수입명세서

순 번	발생일자	후원품 종류	후원자	내 역	품 명	수량 /단위	상당금액
1	2020.05.29	지역사회 후원금품	사단법인 희망을나누는사람들	살균소독제	손소독제	576통	43,200,000
2	2020.06.01	지역사회 후원금품	김포복지재단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다니엘 앨범	CD	2,000장	33,000,000
3	2020.06.26	지역사회 후원금품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아기용품	담요,물티슈, 목욕용품,아기세제등	9박스	900,000
4	2020.06.30 ~ 08.13	지역사회 후원금품	기아오토큐 중동점	차량수리	엔진,브레이크오일, 필터교체	21대	4,200,000

### 3. 후원금(금전) 사용명세서

사용 일자	사용 내역	금 액	산출 기준	비 고
계		54,934,774		
2020.06.18 ~ 08.05	중장년층 고독사예방을 위한 사례관리비	15,000,000	500,000원 × 30명	신세계 프라퍼티
2020.07.16 ~ 09.29	시장대면개선사업	28,916,328	역곡상상시장 점포 7곳 수리지원	신세계 프라퍼티
2020.12.31	코로나19 위기지원금	2,180,000	사)부천희망재단 기부	
2020.12.30	차기이월금	8,838,446		

#### 4. 후원금품 지출명세서

순번	사용일자	사용내역	사용처	수량/단위	상당금액	비고
1	2020.05.29	살균소독제	32개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배분	576통	43,200,000	
2	2020.06.01	강다니엘 앨범	26개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배분	2,000장	33,000,000	
3	2020.06.26	아기용품	4개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배분	9박스	900,000	맘쓰 건이강이 나눔상자
4	2020.06.30 ~ 08.13	차량수리	21개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배분	21대	4,200,000	

#### 5. 후원금 전용계좌

금융기관 등의 명칭	계좌번호	계좌명의
NH농협은행	383-01-009677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NH농협은행	301-0285-8662-91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 2. 제2호 의안

###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 1) 2021년 사업계획

##### ◎ 사회복지향상 환경개선과 개발

사업분류	목표	사업내용	비고
조사연구사업	연중	지역사회 공동주제 관련된 연구사업 진행(사회복지아젠다 및 정책개발 사업) - 주제개발연구프로젝트 추진	

##### ◎ 회원 기관 유대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사업분류	목표	사업내용	비고
총회	연1회	협의회 운영 사항 심의·의결	2월
이사회	연6회 (격월진행)	주요사업집행 논의 심의·의결	
민·관 합동 문화나눔행사	연1회	민·관 네트워크 향상과 유대강화, 종사자 힐링 기회 마련을 위한 문화나눔행사 진행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연1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유공자표창 종사자 힐링 및 단합기회 제공을 위한 기념식 및 워크숍 진행	9월
기관장협의회	연6회 (격월진행)	기관장 중심의 부천시 사회복지 정책 논의 및 정보공유, 역량강화 연수 진행	
실무책임자연합회	연중	부장단 중심의 정보공유 및 연계, 문화나눔행사진행	
정책위원회	연중	주요정책 사안에 대한 아젠다 개발 및 조사연구사업	
교육학술위원회	연중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교육 및 학습, 교육네트워크 단체 활성화사업 진행	
대외협력위원회	연중	부천 지역기관 및 단체 네트워크 강화 및 지원, 사회복지의 날 행사 진행, 동아리 및 문화활동지원사업	
부천시재가복지연합회	연12회	부천시재가복지연합회의 방향성 모색, 사회복지사의 역량 강화 도모	
부천시지역사회조직연합회	연12회	지역사회조직사업 공유 및 공동사업 진행을 통해 실무자 역량 강화, 예비 사회복지사(조직가) 양성 및 지역주민조직 활성화 도모	
동아리 및 문화활동지원사업	연중 4개 단체	협의회 회원 동아리 및 문화활동지원	
지역네트워크 연합사업	연6회	부천 3개 단체(부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천시사회복지사협회, 부천시 사회복지협의회) 네트워크 연계 협력 및 정보공유(대표단, 실무자 정례회의)	

●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분류	목표	사업내용	비고
교육사업	연중	복지 정책 안내 및 지역의 교육욕구를 파악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교육진행	
교육네트워크 단체활성화 사업	연중 4개 단체	사회복지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사업 공모방식의 사업비 지원	
종사자 해외연수	연1회	해외 사회복지시설 벤치마킹 및 종사자들에게 성과 회복을 위한 해외연수 기회제공	

● 부천시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사업분류	목표	사업내용	비고
사회복지 종합정보망사업	연중	사회복지정보센터 홈페이지(웹인포) 운영 및 시민을 위한 정보제공	
홍보사업	연중	사회복지정보센터 홈페이지(웹인포) 홍보물 제작 및 배분	
사회복지정보 안내 및 교육	연중	사회복지관련 정보를 안내 및 지역내 홍보기구(웹인포) 활용을 위한 교육 : 복지관련 기관 홈페이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웹인포홈페이지 소개 및 매뉴얼 교육 진행	

● 기타사업

사업분류	목표	사업내용	비고
VMS사업	연1회	자원봉사활동 인증 시스템 사용 교육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실적 관리하도록 지원하며 자원봉사 관리 체계화 도모	
후원사업	연중	지역내 복지기관에 후원물품 배분을 통한 후원사업 활성화	

## 2021년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예산(안)

(사회복지법인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1) 총괄표

		세 입						세 출							
관	항	목	2021년 예산	2021년 1차 추경	증감(B)-(A)		관	항	목	2021년 예산	2021년 1차 추경	증감(B)-(A)			
			(A)	(B)	액수	비율(%)				(A)	(B)	액수	비율(%)		
<b>총 계</b>			<b>209,919,302</b>	<b>209,919,313</b>	<b>11</b>	<b>0.00</b>	<b>총 계</b>			<b>209,919,302</b>	<b>209,919,313</b>	<b>11</b>	<b>0.00</b>		
사업수입	사업수입	소 계	55,630,000	55,630,000	-	-	사무비	업무추진비	소 계	12,700,000	12,700,000	-	-		
		회비수입	21,850,000	21,850,000	-	-			기관운영비	1,200,000	1,200,000	-	-		
									직책보조비	8,400,000	8,400,000	-	-		
									회의비	3,100,000	3,100,000	-	-		
		일반사업수입	33,780,000	33,780,000	-	-			소 계	1,240,000	1,240,000	-	-		
									운영비	제세공과금	240,000	240,000	-	-	
							수용비 및 수수료	1,000,000	1,000,000	-	-				
						재산조성비	소 계	1,000,000	1,000,000	-	-				
								자산취득비	1,000,000	1,000,000	-	-			
보조금수입	보조금수입	소 계	35,000,000	35,000,000	-	-	사업비	일반사업비	소 계	164,200,000	164,200,000	-	-		
		경상보조금수입	35,000,000	35,000,000	-	-			사회복지의날행사	14,500,000	14,500,000	-	-		
						민관합동 체육문화나눔행사			1,000,000	1,000,000	-	-			
						해외연수			20,700,000	20,700,000	-	-			
						조사연구사업			1,000,000	1,000,000	-	-			
						부재연사업			1,000,000	1,000,000	-	-			
						실무책임자연합회사업			1,000,000	1,000,000	-	-			
						기관장협의회사업			1,000,000	1,000,000	-	-			
						정책위원회사업			1,000,000	1,000,000	-	-			
						교육학술위원회사업			1,000,000	1,000,000	-	-			
						대외협력위원회사업			1,000,000	1,000,000	-	-			
						부지연사업			1,000,000	1,000,000	-	-			
						동아리지원 및 문화활동지원사			1,000,000	1,000,000	-	-			
						기타지정후원사업			80,000,000	80,000,000	-	-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사업			400,000	400,000	-	-			
						교육네트워크 단체 활성화사업			2,000,000	2,000,000	-	-			
						실무자 역량강화사업			1,600,000	1,600,000	-	-			
						사회복지정보센터사업			35,000,000	35,000,000	-	-			
접수입	접수입	소 계	40,000	40,000	-	-			예비비	예비비	소 계	30,779,302	30,779,313	11	0.00
		기타예금이자수입	40,000	40,000	-	-					예비비	30,779,302	30,779,313	11	0.00

(2) 세입내역

[단위 : 원]

관	항	목	2021년 예산	2021년 1차 추경	증감(B)-(A)		2021년 1차 추경 산출내역
			(A)	(B)	액수	비율(%)	
<b>총 합 계</b>			<b>209,919,302</b>	<b>209,919,313</b>	<b>11</b>	<b>0.00</b>	
사업수입	사업수입	소 계	55,630,000	55,630,000	-	-	
		회비수입	21,850,000	21,850,000	-	-	개인회비 (370*30,000원) 11,100,000 원 단체회비(28단체*300,000원 / 12단체*150,000) 10,200,000 원 이사회비(11명*50,000원) 550,000 원 <b>계 21,850,000 원</b>
		일반사업수입	33,780,000	33,780,000	-	-	사회복지의날행사참가비(4만5천*306명) 13,770,000 원 기관장협의회 워크숍 참가비(3만원*15명) 450,000 원 실무자연합회워크숍참가비(3만원*15명) 450,000 원 교육학술위원회워크숍참가비(3만원*15명) 450,000 원 대외협력위원회워크숍참가비(3만원*15명) 450,000 원 정책위원회워크숍참가비(3만원*15명) 450,000 원 부재런워크숍참가비(3만원*15명) 450,000 원 부자연워크숍참가비(3만원*15명) 450,000 원 해외연수참가비(80만원*20명) 16,000,000 원 인증요원양성교육 참가비(2만원*20명) 400,000 원 실무지역량강대학교교육참가비(5천원*92명) 460,000 원 <b>계 33,780,000 원</b>
보조금수입	보조금수입	소 계	35,000,000	35,000,000	-	-	
		경상보조금수입	35,000,000	35,000,000	-	-	사회복지정보센터사업 보조금 <b>계 35,000,000 원</b>
후원금수입	후원금수입	소 계	80,000,000	80,000,000	-	-	
		지정후원금	80,000,000	80,000,000	-	-	지정후원금 <b>계 80,000,000 원</b>
이월금	이월금	소 계	39,249,302	39,249,313	11	0.00	
		전년도이월금	39,249,302	39,249,313	11	0.00	전년도이월금 - 사업수입이월금 30,410,856 원 - 보조금 이월금 11 원 - 후원금이월금 8,838,446 원 <b>계 39,249,313 원</b>
접수입	접수입	소 계	40,000	40,000	-	-	
		기타예금이자수입	40,000	40,000	-	-	예금이자 <b>계 40,000 원</b>

(3) 세출내역

[단위 : 원]

관	항	목	2021년 예산	2021년 1차 추경	증감(B)-(A)		2021년 1차 추경 산출내역	
			(A)	(B)	액수	비율(%)		
<b>총 합 계</b>			<b>209,919,302</b>	<b>209,919,313</b>	<b>11</b>	<b>0.00</b>		
사무비	업무추진비	<b>소 계</b>	<b>12,700,000</b>	<b>12,700,000</b>	-	-		
		기관운영비	1,200,000	1,200,000	-	-	기관운영비 <b>계 1,200,000 원</b>	
		직책보조비	8,400,000	8,400,000	-	-	회장활동비 3,600,000 원 사무처장활동비 3,600,000 원 활동비 1,200,000 원 <b>계 8,400,000 원</b>	
		회의비	3,100,000	3,100,000	-	-	이사회 및 회장단회의비 1,000,000 원 정기총회 2,100,000 원 <b>계 3,100,000 원</b>	
	운영비	<b>소 계</b>	<b>1,240,000</b>	<b>1,240,000</b>	-	-		
		제세공과금	240,000	240,000	-	-	협의회비(연회비) <b>계 240,000 원</b>	
		수용비및수수료	1,000,000	1,000,000	-	-	수용비 및 수수료 <b>계 1,000,000 원</b>	
	재산조성비	시설비	<b>소 계</b>	<b>1,000,000</b>	<b>1,000,000</b>	-	-	
			자산취득비	1,000,000	1,000,000	-	-	사무용 비품구입 <b>계 1,000,000 원</b>
	사업비	일반사업비	<b>소 계</b>	<b>164,200,000</b>	<b>164,200,000</b>	-	-	
사회복지의날행사			14,500,000	14,500,000	-	-	사회복지의날행사 참가비 13,770,000 원 사회복지의날 행사 지원금 730,000 원 <b>계 14,500,000 원</b>	
민관합동 체육문화나눔행사			1,000,000	1,000,000	-	-	체육문화나눔행사 <b>계 1,000,000 원</b>	
해외연수			20,700,000	20,700,000	-	-	해외연수비용 16,000,000 원 해외연수지원금 4,700,000 원 <b>계 20,700,000 원</b>	
조사연구사업			1,000,000	1,000,000	-	-	조사연구사업 <b>계 1,000,000 원</b>	
부재련사업			1,000,000	1,000,000	-	-	부재련사업 <b>계 1,000,000 원</b>	
실무책임자연합회사업			1,000,000	1,000,000	-	-	실무자연합회사업 <b>계 1,000,000 원</b>	
기관장협의회 사업			1,000,000	1,000,000	-	-	기관장네트워크사업 <b>계 1,000,000 원</b>	

관	항	목	2021년 예산	2021년 1차 추경	증감(B)-(A)		2021년 1차 추경 산출내역			
			(A)	(B)	액수	비율(%)				
사업비	일반사업비	정책위원회사업	1,000,000	1,000,000	-	-	정책위원회사업	계	1,000,000 원	
		교육학술위원회사업	1,000,000	1,000,000	-	-	교육학술위원회사업	계	1,000,000 원	
		대외협력위원회사업	1,000,000	1,000,000	-	-	대외협력위원회사업	계	1,000,000 원	
		부지연사업	1,000,000	1,000,000	-	-	부지연사업	계	1,000,000 원	
		동아리지원및문화활동 지원사업	1,000,000	1,000,000	-	-	동아리지원 및 문화활동지원사업	계	1,000,000 원	
		기타지정 후원사업	80,000,000	80,000,000	-	-	기타지정 후원사업	계	80,000,000 원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 관리사업	400,000	400,000	-	-	VMS 교육	계	400,000 원	
		교육네트워크단체 활성화사업	2,000,000	2,000,000	-	-	교육네트워크단체 활성화사업	계	2,000,000 원	
		실무자 역량강화사업	1,600,000	1,600,000	-	-	실무자 역량강화교육	계	1,600,000 원	
		사회복지정보센터사업	인건비	급여	35,000,000	35,000,000	-	-	급여	24,000,000 원
				퇴직적립금					2,000,000 원	
				사회보험료					2,511,600 원	
			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료					815,840 원	
				여비					100,000 원	
제세공과금	122,560 원									
사회복지종합정보관리	900,000 원									
공공요금	550,000 원									
정보센터운영사업	사회복지종합정보 구축망사업		1,000,000 원							
	홍보사업		2,500,000 원							
	사회복지 정보 안내 및 교육	500,000 원								
								계	35,000,000 원	
예비비	예비비	소 계	30,779,302	30,779,313	11	0.00				
		예비비	30,779,302	30,779,313	11	0.00	예비비	계	30,779,313 원	



### 3. 제3호 의안 - 임원선출



◆ **선출직이사 후보명단 (임기: 2021.02 ~ 2022.02)**

연번	분과	소속 기관	직책	성명	비고
1	선출직 이사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이효민	

연번	분과	소속 기관	직책	성명	비고
2	선출직 이사	은가람 빌	원장	김은희	

◆ **감사 후보명단 (임기: 2021.02 ~ 2023.02)**

연번	분과	소속	직책	성명	비고
1	감사	법률사무소 부원	변호사	김학무	연임

연번	분과	소속	직책	성명	비고
2	감사	부천시장애인직업 재활시설	국장	고홍석	연임

\*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정관

‘임원규정 제5조(이사의 선출)’

- 이사선출은 사전에 후보를 등록받아 회원들의 직접투표로 결정한다.
- 등록된 후보자가 선출정원에 미달한 때는 등록된 전원을 당선자로 한다.
- 등록된 후보자가 선출정원에 미달한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미달된 정원만큼의 후보자를 본인의 서면동의를 얻어 총회에 부의할 수 있다. 이 때 총회는 후보자 각각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한 사람을 이사로 선출한다.

제6조(감사의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 후보자를 총회에 추천할 수 있다.



## IV. 부록

-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정관
- 개인 및 단체회원 명부



#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정관

제 정: 2005년 6월 27일  
제1차 개정: 2007년 6월 25일  
제2차 개정: 2013년 1월 10일  
제3차 개정: 2016년 1월 21일  
제4차 개정: 2018년 2월 20일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는 부천시지역의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제반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 ① 이 회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이하 "이 회"라 한다)라 한다.
- ② 이 회의 영문표기는 Bucheon Council on Social Welfare로 하고, 약칭은 BCCSW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회의 주된 사무소는 부천시 내에 둔다.

제4조(사업) 이 회의는 설립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부천시 소재 사업복지사업기관 간의 협력 및 협의·조정
2.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3.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4.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5.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6.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7.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8.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9. 도지사 또는 시장, 중앙협의회 또는 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업무
10. 사회복지모금활동 및 결연후원 업무
11. 기타 이 회 목적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도협의회와의 관계) 이 회의는 도협의회와의 협력을 증진하고 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회 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1. 부천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 및 임직원 <2018.2월개정>
2. 부천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2018.2월개정>
3. 부천지역의 경제·언론·종교·법조·문화·교육·보건의료·청소년 등의 시설 및 종사자<2018.2월개정>
4. 그 밖에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을 위하여 회장이 추천하는 자

제7조(회원의 구분)

- ① 이 회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2018.2월개정>
- ② 삭제 <2018.2월>
- ③ 개인회원은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2018.2월개정>
- ④ 단체회원은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회비를 납부한 단체로 한다.<2018.2월신설>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평등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총회의 의결권을 갖는다.

이하삭제 <2018.2월>

제9조(회원의 임의탈퇴) 회원으로서 탈퇴를 원하는 자는 탈퇴원서를 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탈퇴된다. 이하삭제 <2018.2월>

제10조(회원의 자격정지)

- ① 회원으로서 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회원의 자격을 정지 또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2018.2월개정>
- ② 제1항의 경우 회장은 그 사실을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회원의 제명 및 복권)

- ① 회원으로서 2년 이상 회비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2018.2월개정>
- ② 이 회의 명예를 크게 손상한 자나 정관과 각종 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회원에서 제명할 수 있다.
- ③ 자격박탈 또는 제명의 경우는 이사회 결의로서 시행하며 이사회는 10일 전에 해당회원에게 통지하고, 이사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제명된 회원이 미납부된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복원하고자 신청할 때 이사회 심의를 거쳐 복권할 수 있다.<2018.2월신설>

제12조(회원규정) 회원의 가입·탈퇴와 권리·의무의 행사방법, 회비 또는 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 3 장 임 원

####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이 회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이 회의 직제와 관련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직제규정).<2018.2월개정>
- ② 이사는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인 당연직 이사와 선출직 이사로 구분한다.<2016.1월개정>

#### 제14조(임원의 선임)

- ① 이 회의 이사장은 회장으로서는 이 회를 대표하며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 ② 이 회의 이사와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감사 중 1인은 정회원이 아니라도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이하삭제 <2016.1월개정>
- ③ 부회장은 이사 중 2인을 회장이 지명하되, 부회장의 지명과 해임은 이사회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2013.1월개정>
- ④ 임원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임원규정).

#### 제15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2013.1월개정>
- ②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보궐선출은 총회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2013.1월개정>
- ③ (삭제)
- ④ 회장이 임기 중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거 때까지 수석부회장이 업무를 대행한다.<2018.2월개정>
- ⑤ 임원(회장,부회장,감사,이사)이 임기 중 결원 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여임기까지로 한다.<2018.2월신설>

#### 제16조(임원의 결격 사유)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사회복지 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중에서 퇴직 전 3년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2013.1월신설>
- ② 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제17조(임원의 자격상실 등)

- ① 임원이 회원자격이 정지되면 임원의 자격도 정지된다.<2018.2월개정>
- ② 임원이 회원에서 제명된 때는 임원의 자격도 상실한다.<2018.2월개정>
- ③ 부천관내 근무기관을 퇴직하면 임원 자격은 상실한다.<2013.1월개정>

- ④ 임원이 임원회비 등의 납부의무를 소홀히 한 때는 임원의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제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정한다.

제17조의 1(임원의 보충)

- ①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2013.1월신설>

제18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제반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2013.1월개정>
-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 의 직능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이 회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 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총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그밖에 이사회 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⑤ 임원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의 1(임원의 겸직 금지)

- ① 삭제<2018.2월>
- ② 삭제<2018.2월>

제19조(명예회장 및 고문)

- ① 이 회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기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명예회장과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② 명예회장과 고문은 회장이 추대하여 이사회 의 결의로 취임한다.

## 제 4 장 회 의

### 제1절 총 회

제20조(총회)

- ① 이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총회를 둔다.
-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1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2. 해산에 관한 사항
- 3. 회비 및 회원 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4.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8. 그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2조(총회의 소집 등)

- 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 ③ 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개최 7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 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총회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감사가 연서로 총회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1월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4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5조(의결권·선거권의 대리행사)

- ①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2018.2월개정>
- ② 회원은 다른 회원의 대리인이 될 수는 없으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회원수는 1인에 한한다.<2018.2월개정>
- 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총회 의사록)

-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5인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 ③ 회장은 의사록을 이 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2절 이사회

### 제27조(이사회 구성)

- ① 이 회에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의결에 참여할 수는 없다.

### 제28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원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2. 기본재산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사무처 직원 및 위탁기관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4.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5.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6. 회원 제명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8. 임원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9. 그밖에 회장이 부의한 사항

### 제29조(이사회 소집 등)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 2개월 마다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감사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청하는 때는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한다.
-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7일 이전에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0조(이사회 개회와 의결 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31조(서면결의 등) (삭제)

제32조(의결권의 대리행사) 이사는 위임장을 제출함으로써 이사회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 위임장을 제출한 이사는 의결에서 기권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33조(이사회 회의록)

-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3인 이상의 이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 ③ 회장은 의사록을 이 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 5 장 전문위원회, 자문위원회 및 사무처

### 제34조(전문위원회)

- ① 이 회의 업무를 사회복지분야별로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 이사로 선임한다. 단, 기관장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2인을 이사로 선임한다.<2013.1월개정>
- ③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둔다.(직제규정).<2018.2월개정>

### 제34의 1조(자문위원회)

- ① 이 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2007.6월신설>
- ②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이사회회의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둔다.(직제규정).<2018.2월개정>
- ③ 삭제<2018.2월개정>
- ④ 삭제<2018.2월개정> <2018.2월개정>

### 제35조(사무처)

- ① 이 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장 등 필요한 직원과 조직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처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회의 승인을 거쳐 임명한다.
- ④ 사무처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를 지휘·통할한다.

제36조(직원) 사무처의 조직과 업무분장, 직원의 임용과 복무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 6 장 자산 및 회계

### 제1절 자 산

제37조(자산의 구분) 이 회의 자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한다.

### 제38조(자산의 관리)

- ① 자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유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임대보증금 반환에 관련되는 전세권 설정은 이를 완료한 후에 보고할 수 있다.
- ② 자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9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회의 경비는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정부보조금.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익금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2절 회 계

제40조(회계의 구분 등)

- ① 이 회의 회계는 목적사업에 속하는 회계와 수익사업에 속하는 회계 및 그 밖의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 이 회의 회계처리는 관계 법규에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및 회계처리 기준을 따른다.

제41조(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2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43조(사업계획 및 예산) 이 회의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회장이 회계연도 개시 전 1월 이전에 작성하여 매년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44조(사업실적 및 결산) 이 회의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장이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7 장 위탁운영 및 수익사업

제45조(위탁운영)

- ① 이 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이나 기관을 수탁 받아 운영할 수 있다.
- ② 위탁사업이나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6조(수익사업)

- ① 이 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회장은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책임자를 둘 수 있다.

## 제 8 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47조(정관변경) 이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해산) 이 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와 이사회 구성원 각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9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회가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 제 9 장 공고방법

제50조(공고의 방법)

- ① 이 회가 법령 및 정관과 기타 총회 및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이 회의 게시판 또는 이 회의 홈페이지 및 기관지에 게재한다.
- ② 제1항의 공고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거나 지방지에 게재한다.
- ③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 제 10 장 보 칙

제51조(준용법규)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민법·비송사건절차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과 기타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52조(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회원·업무 및 사업과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당시 종전의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가 추진하여왔던 각종 업무와 사업 및 예산은 이 정관에 따라 이 회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임원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이하 '이 회'라 한다.)의 정관에 따라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① 이사회는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면 총회 1개월 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되, 회장이 3명, 감사가 각 2인씩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때 추천할 회장과 감사가 결원일 경우 회장은 수석부회장이, 감사는 다른 감사가 추천권을 대신 행사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이 당해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공고일 이전까지 위원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정관과 이 규정에 정해진 사항 외의 선거절차와 방법의 결정
2. 선거의 공고와 공정관리
3. 회장 선거의 진행
4. 기타 총회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 제4조(회장의 선출)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의 선출이 필요하면 총회 15일전까지 선거방법을 공고한다.
- ② 회장의 선출은 사전에 후보를 등록받아 회원들의 직접 투표로 결정한다.
- ③ 후보가 1인이면 투표 없이 당선자로 하고, 2인이면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득표자 2인이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제5조(이사의 선출)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 15일 전까지 이사선출방법을 공고한다.
- ② 이사선출은 사전에 후보를 등록받아 회원들의 직접투표로 결정한다.
- ③ 등록된 후보자가 선출정원에 미달한 때는 등록된 전원을 당선자로 한다.
- ④ 등록된 후보자가 선출정원에 미달한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미달된 정원만큼의 후보자를 본인의 서면동의를 얻어 총회에 부의할 수 있다. 이 때 총회는 후보자 각각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한 사람을 이사로 선출한다.

### 제6조(감사의 선출)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 후보자를 총회에 추천할 수 있다.
- ② 총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추천의 채택여부를 우선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총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천을 가결했다라도 총회의 직접추천으로 후보자를 추가할 수 있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천이 총회에서 부결될 경우는 회원들의 직접 추천에 의해 선거를 실시한다.

### 제7조(회비납부의무)

- ① 이 회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임원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때, 임원의 개인적인 신분 등을 고려하여 임원회비의 감면을 정할 수 있다.
- ② 임원회비를 6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임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이 때 회장은 7일 전에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임원회비를 1년 이상 미납할 경우 총회 결의로 임원에서 제명할 수 있다. 이 때 회장은 15일 전에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임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하고자 할 때는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8조(위임장)

- ① 본인이 이사회에 직접 참석할 수 없을 때는 별지1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출석을 대신한다.
- ②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참석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때 대리인은 본인이 직접 출석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한다.

부 칙 (2005. 7. 7.)

제1조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2018.2월신설>

##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직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이하 '이 회'라 한다)의 정관에 따라 직제와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 ① 이회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사무처장 1명을 포함하는 전문위원회로 구성한다.
- ② 이회의 전문위원회는 기관장협의회, 정책위원회, 교육학술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실무책임자연합회, 부천시재가복지연합회, 부천시지역사회조직연합회로 구성한다.
- ③ 이회의 감사는 이사가 아닌 회원과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임한다.
- ④ 선출된 회장은 전문위원회에 참여하여야 한다.
- ⑤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둔다.

### 제 3조(직무)

- ① 기관장협의회는 단체회원의 대표단위로서 부천지역 사회복지관련 논의와 기관간의 연계 및 정보공유의 기능을 수행한다.
- ② 정책위원회는 부천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아젠다발굴, 정책제안 및 조사연구 사업 등을 수행한다.
- ③ 교육학술위원회는 사회복지관련 교육 및 회원들간의 학술연구사업 등을 수행한다.
- ④ 대외협력위원회는 부천지역 기관 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 ⑤ 실무책임자연합회는 민관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프로그램과 사회복지관련 정보공유 기능을 수행한다.
- ⑥ 부천시재가복지연합회는 재가복지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학습과 함께 관련 공동사업을 수행한다.
- ⑦ 부천시지역사회조직연합회는 지역사회조직사업에 대한 정보공유 및 학습과 함께 관련 공동사업을 수행한다.

### 제 4조(이사의 정수와 선임방법)

- ①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 이사로 임명한다. 단, 기관장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2인을 이사로 임명한다.
- ② 이회는 당연직 이사와 함께 3명 이내의 선출직 이사를 둔다. 선출직 이사는 총회를 통해 선출한다.

### 제 5조(자문위원회)

- ① 이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문위원을 3명 이내로 둘 수 있다.
- ②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부 칙 (2018. 2. 20.)

제1조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 2020년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개인회원 (362명)

소속기관	총원	성 명
경기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13	박동옥, 최운진, 손정민, 이한결, 우미현, 박상호, 김유림, 윤유희, 정도화, 이현정, 전해원, 최은애, 이미선
경기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	12	송예순, 차진수, 안이숙, 송인재, 정세미, 윤경, 이병진, 장동규, 최태웅, 김광일, 조남희, 손혜준
경기부천원미지역자활센터	19	박혜준, 최준기, 김명옥, 최선, 박은하, 김승준, 김선경, 한민우, 박혜진, 김준경, 이성현, 박준수, 오도경, 임건우, 진경은, 황호준, 홍혜진, 김은선, 홍예은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8	이현주, 이예스더, 남궁경자, 김지영, 유병민, 박혜경, 김선재, 정준우
고강종합사회복지관	16	최종복, 이은선, 강은우, 조희연, 강정식, 최상철, 서선희, 서재승, 김선영, 홍유희, 부민주, 이선미, 권미선, 고현정, 전수정, 유동현
꿈나무아동종합상담소	5	김병학, 조정현, 박인미, 임은경, 박상영
동광임파워먼트센터	10	김장배, 김다솔, 김유라, 이두혁, 조승리, 김하나, 김지선, 이준별, 서진영, 김소연
대산종합사회복지관	13	차재경, 김은정, 최은정, 백은유빈, 백민영, 오성림, 소은경, 박원희, 이성현, 김예진, 박은진, 김영연, 명진아
부천노인복지센터	7	이종화, 이지애, 신정인, 박진희, 양은영, 한승아, 최윤미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5	권혁철, 손은정, 장은혜, 유성진, 안정호
부천시경로주간보호센터	4	이승주, 임보혜, 정수민, 임윤희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11	정선미, 유민영, 최경환, 김선희, 김민영, 양미숙, 권미선, 강명진, 김철호, 이영아, 윤효정
부천시노동복지회관	15	정근철, 정명순, 김은희, 유병련, 배지영, 배자영, 황희원, 박주연, 김지은, 조계순, 김진아, 김성숙, 탁은정, 황지영, 이지현
부천시니어클럽/실버인력뱅크	9	권치영, 김미희, 김소미, 김현진, 최경희, 김성광, 김재근, 박형희, 손다연
부천시소사노인복지관	10	이덕수, 최종원, 이현아, 이영선, 강명은, 박현진, 김지현, 박효진, 김은혜, 박순영
부천시오정노인복지관	14	김봉준, 황성애, 정혜림, 엄아람, 두태우, 윤경미, 조희정, 김은주, 정현주, 김민교, 김상봉, 김선희, 장민희, 박정희
부천시원미노인복지관	17	장기욱, 김민욱, 김설희, 한수진, 홍지영, 강애숙, 홍희대, 송애영, 박인숙, 김영옥, 김주영, 하수미, 김미정, 이장선, 남현숙, 김수정, 정지영
부천시자원봉사센터	3	유연승, 임순진, 이민주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16	이효민, 김효은, 김유선, 박상현, 권형안, 최숙재, 양은미, 변진희, 윤슬기, 김재민, 이지영, 김윤아, 신창훈, 손희주, 윤영주, 김현수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15	남권우, 심소영, 광문희, 박주오, 정영자, 오광철, 이기훈, 신주연, 장경희, 이성진, 신진희, 고흥석, 문주환, 김찬우, 윤혜령
부천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25	이혜란, 이은형, 김종옥, 조윤정, 유정숙, 김춘식, 김유화, 이창수, 박성규, 박은희, 김경희, 이은실, 김명희, 마종열, 안현진, 조영희, 한매역, 김옥미, 최향숙, 한희정, 최정인, 김인경, 김경희, 박희주, 이영희
부천헤림원&부천헤림요양원	2	박진숙, 이종숙
부천헤림직업재활시설	1	권미영

부천희망재단	1	김범용
삼광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3	조재일,고재오,손명기
삼정종합사회복지관	8	김혜진,강미옥,이정수,박정아,윤소정,최인성,김소희,최보람
상동종합사회복지관	11	정성기,강희복,김대조,황용민,정아영,정재경,신명숙,지초롱,조우인,서연숙,이태호
신중동종합사회복지관	12	최영,황기태,박상미,김수정,정혜원,박선정,유하나,김수빈,손경임,유새롬,임규희,윤소윤
소사본종합사회복지관	11	이명위,권민혁,유향진,김윤겸,홍은경,강선영,이은주,임병현,전세정,공윤주,고재운
소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3	강영선,박정인,노연주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19	유두환,이지완,이혜진,장윤희,박종섭,이수준,박지현,이주연,안은빈,신종현,이성국,김태영,이혜경,고은주,노희담,서경석,이수정,권미경,김도연
오정종합사회복지관	15	천경희,정경자,옥슬비,김성경,최은경,박유미,홍성만,강윤정,구숙지,안선하,이희령,전성희,강혜진,고라니,정나진
은가람 빌	1	김은희
(주)나눔과돌봄	13	박태연,김경옥,박명숙,김오남,정희주,허분옥,권유미,김송희,노현숙,김진희,유인애,유다연,길민주
해밀도서관	15	이상희,이슬,송혜경,박진희,김진아,백인성,조혜영,김문정,오슬기,이주연,황병철,김동환,이윤희,김세결,이다정

◆ 2020년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단체회원 ◆

번호	기관명	시설장	주소	전화번호	팩스	비고
1	경기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박 동 옥	부천시 경인로 224번길 36 3층	323-9946	323-9949	
2	경기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	송 예 순	부천시 경인로 477 4층	349-2355	349-2356	
3	경기부천원미지역자활센터	박 해 준	부천시 부흥로 303번길 8 청원프라자 403호	654-7399	654-7999	
4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이 현 주	부천시 심종로 68	683-1389	683-1388	
5	고강종합사회복지관	최 종 복	부천시 고리울로 79	677-9090	679-9707	
6	꿈나무아동종합상담소	김 병 학	부천시 안곡로 194번길 14	347-7205	348-7206	
7	동광임파워먼트센터	김 장 배	부천시 부일로 191번길 30 동성프라자701호	323-3206	323-3325	
8	대산종합사회복지관	차 재 경	부천시 심곡로 9번길 54 5층	665-6061	665-6064	
9	범안종합사회복지관	박 현	부천시 범안로 129번길 17 범박주민지원센터 2층	719-8180	719-8811	
10	부천노인복지센터	이 종 화	부천시 부흥로 256 301호	613-7002	613-7004	
11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권 혁 철	부천시 원미로 202	653-6131	653-6856	
12	부천이주민지원센터	손 인 환	부천시 계남로 336	654-0664	668-0077	
13	부천시경로주간보호센터	이 승 주	부천시 신흥로 53번길 38	663-9577	662-9599	
14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박 종 현	부천시 계남로 336	661-3030	232-1949	
15	부천시노동복지회관	정 근 철	부천시 상오정로 10	679-2900	679-2924	
16	부천시니어클럽/실버인력뱅크	권 치 영	부천시 부일로 406 KT부천지사 3층	668-4107	656-4105	
17	부천시소사노인복지관	이 덕 수	부천시 경인옛로 73 소사어울마당 3층	347-9534	347-4416	
18	부천시오정노인복지관	김 상 봉	부천시 성오로 172번길 오정어울마당 5층	683-9290	683-9291	
19	부천시원미노인복지관	장 기 옥	부천시 부천로 136번길 27 원미어울마당 1층	667-0261	666-0262	
20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 효 민	부천시 역곡로 367	670-1100	681-0799	
21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남 권 우	부천시 부천로 342	671-2500	671-0230	
22	부천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김 인 경	부천시 소향로 101 KT꿈품센터 내	327-2866	327-2867	
23	부천헤림요양원	이 현 응	부천시 경인로 304번길 26	666-7990	614-0111	
24	부천헤림원	임 명 호	부천시 경인로 304번길 26	666-7990	614-0111	
25	부천헤림직업재활시설	권 미 영	부천시 경인로 304번길 26	611-7994	661-3949	
26	삼광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조 재 일	부천시 중동로 358 수향빌딩 4층	322-1203	653-4092	
27	삼정종합사회복지관	방 찬 일	부천시 삼작로 52	323-3162	324-9892	
28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정 성 기	부천시 석천로 16번길 50 상동어울마당	652-0420	655-0420	
29	신중동종합사회복지관	최 영	부천시 도약로 146 덕유마을내	325-2161	326-0502	
30	소사본종합사회복지관	이 명 위	부천시 호현로 489번길 50	349-3100	349-2068	
31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유 두 환	부천시 장말로 351번길 9 심곡1동주민지원센터 3층	612-0726	612-0727	
32	오정종합사회복지관	천 경 희	부천시 성오로 149번길 18	677-0108	677-0107	
33	은가람 빌	김 은 희	부천시 안곡로 194번길 14	343-4398	345-4398	
34	(주)나눔과돌봄	박 태 연	부천시 석천로 184번길 16 3층	323-9264	323-9972	
35	(사)부천희망재단	정 인 조	부천시 중동로 248번길 86 4층 403호	321-9123	321-9134	상임이사 김범용
36	사)위드프렌즈	배 영 옥	부천시 은성로 68번길 22-12	346-9077	347-2540	
37	한국다문화복지협회 부천시부	이 옥 녀	부천시 중동로 386번길 302호	323-2472	323-2972	
38	현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 수 경	부천시 길주로 392번길 28	216-0223	031-622-9199	

◆ 2020년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신규가입 단체회원 ◆

번호	기관명	시설장	주소	전화번호	팩스	비고
1	해밀도서관	이 상 희	부천시 옥산로 10번길 4	650-4600	612-2949	
2	소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강 영 선	부천시 호현로 489번길 50	349-9192	349-9196	

